

의안번호	제180호
의결연월일	2019. 12.04.

—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 —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15일 논산시장
 나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5일
 다. 상정일자 : 2019년 12월 04일,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도로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과태료는 그 부과 근거나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,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상의 사항에 반하도록 규정할 수 없음.
 -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
 -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자치법규 정비목록 통보사항임.
-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자치법규 정비개선(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준용)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준용에 대한 내용 삭제(안 제3조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